

보 고 서

2017 아산지역
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

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

[목 차]

I.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 결과

- 1.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3
- 2.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초 결과 요약 4

II. 실태조사 결과분석

- 1. 최저임금 5
- 2.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여부 7
- 3. 청소년노동인권교육 8
- 4.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 12
- 5.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15
 - 1). 아르바이트 경험 15
 - 2). 첫 아르바이트 16
 - 3). 구직 경로 18
 - 4).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19
 - 5). 아르바이트 시기 20
 - 6). 아르바이트 장소 21
 - 7). 근로계약서 28
 - 8). 근로조건 31
 - 근무기간
 - 근무일수
 - 휴게시간
 - 임 금
 - 주휴수당
 - 9). 부당대우/대처 36

- [첨부자료] 실태조사 설문지 42

I.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 결과

1. 2017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

목 적

- 아산지역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의 문제점 파악
-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
- 이를 통해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, 노동인권교육의 정책적 방향 수립

조사기간

2017.11.27. ~ 12. 30.

조사대상

아산지역 관내 고등학교 10개교 2, 3학년 청소년

조사방법

실태조사서 배포 후 수거방식

조사장소

아산시 관내 고등학교(10개교)

조사기관

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

2. 2017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요약

□ 응답자 기초조사 결과

- 아산지역고등학교 10개교 중 충남외국어고교를 제외한 9개 고교에 재학 중인 2~3학년 청소년

- 전체응답자 1872명 중 남학생 887명, 여학생이 985명

- 응답자 중 연령(생년)기준 분포는 1998년(만19세) 14명, 1999년생(만18세) 1480명, 2000년생(만17세) 373명, 2001년생(만16세) 5명.

- 학교별 아르바이트 현황 응답자대비 아르바이트 비율(%)

학 교	응답자	아르바이트 중 이거나 경험자			비 고
		현재(%)	경험(%)	계(%)	
배방고등학교	252	84(33.3)	63(25.0)	147(58.33)	* 3학년
설화고등학교	236	80(33.9)	41(17.3)	121(51.27)	* 3학년
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	104	32(30.7)	41(39.4)	73(70.19)	* 2학년
온양고등학교	157	30(19.1)	37(23.5)	67(42.68)	* 3학년
온양여자고등학교	230	75(32.6)	44(19.1)	119(51.74)	* 3학년
온양한울고등학교	248	88(35.4)	48(19.3)	136(54.84)	* 3학년
온양용화고등학교	163	53(32.5)	48(29.4)	101(61.96)	* 3학년
아산고등학교	239	44(18.4)	66(27.6)	110(46.03)	* 3학년
삼성고등학교	243	28(11.5)	12(4.9)	40(16.46)	* 3학년
전 체	1872명	514명	400명	914명(48.82)	

* 1. 여성가족부, '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' 2016에 의하면 고등학생 18.1%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2.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응답자가 3명으로 분석에서 제외.

- 아르바이트 경험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응답자 1872명 중 914명으로 48.82%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.

- 응답자 중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514명(27.46%)이고,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0명(21.37%).

- 남학생 전체 887명 중 495명(55.8%)이, 여학생 전체 985명 중 419명(42.5%)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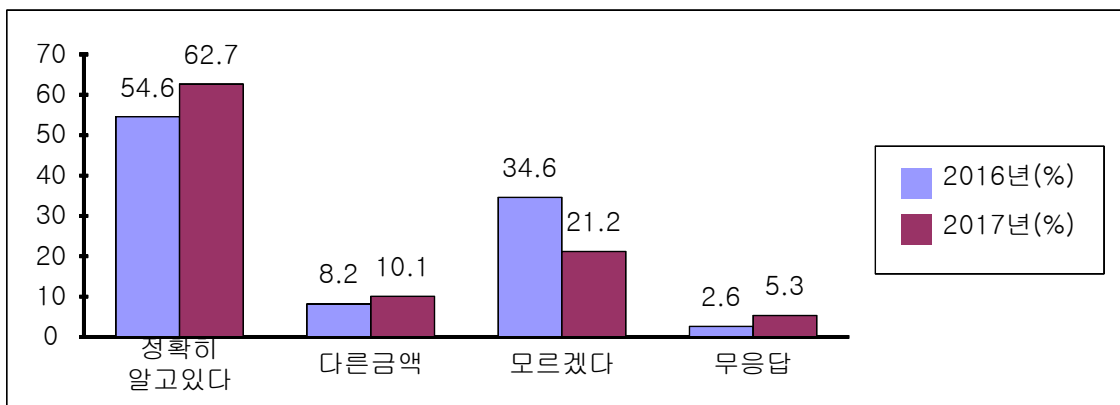
II. 실태조사 결과분석

1. 최저임금

1).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62.7%로 나타남.

- 2017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64명으로 전체응답자 1872명 중 72.7%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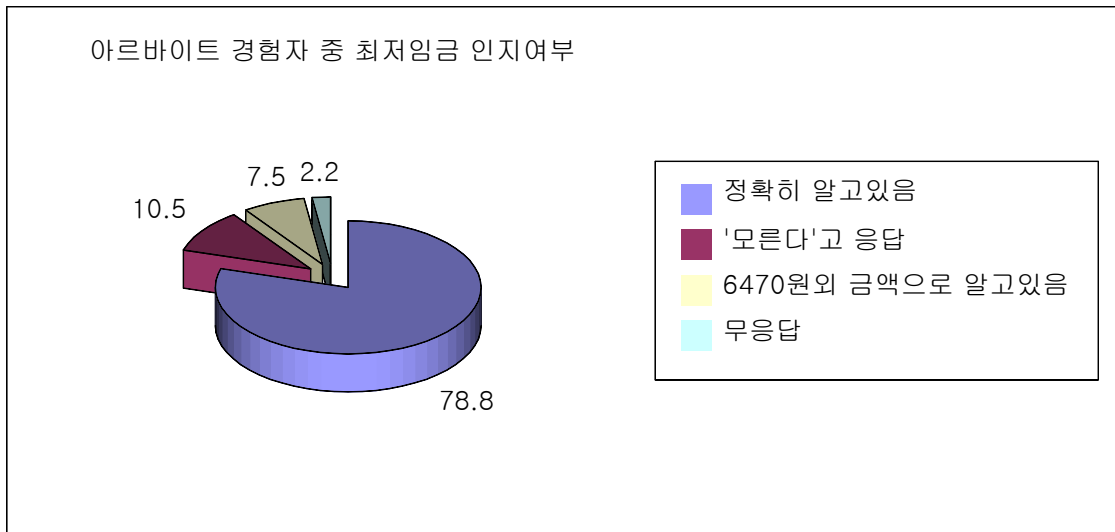
- 이 중 647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1175명(62.7%)으로 189명은 6470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알고 있었다. 최저임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397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1.2%로 여기에 무응답 100명,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에 표시한 응답자까지 더하면 2017년 최저임금을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36.64%로 나타났다.



[그림_1] 2017년 최저임금(금액) 알고 있는지 여부

- 2016년의 경우,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54.6%,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표시한 청소년은 42.8%로 지난해(2016년)에 비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.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914명 중에도 최저시급 647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666명(78.8%)으로 나머지 응답자의 경우 모른다 96명(10.5%), 6470원이외의 금액에 표시한 경우가 69명(7.5%), 무응답이 20명으로 나타났다.



[그림_2]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최저임금(금액) 인지 여부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18%의 청소년이 최저임금 6470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여기에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0.2%는 최저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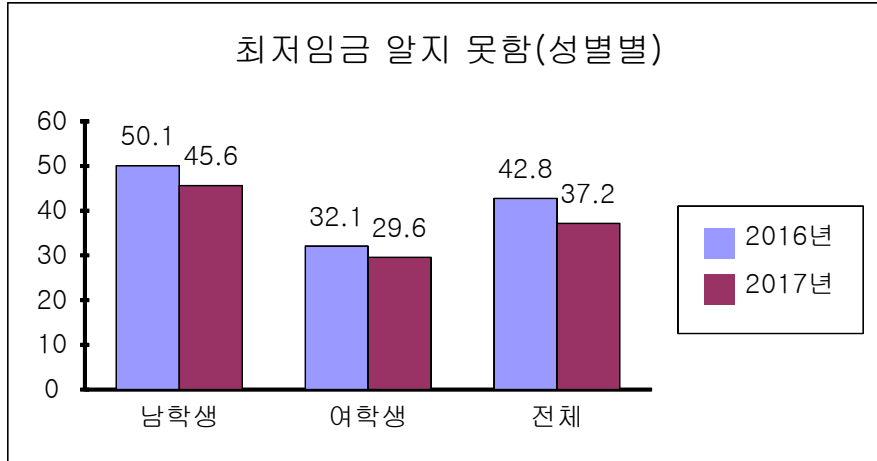
2)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최저임금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.

- 응답 남학생 887명 중 405명인 45.6%가 최저임금(6470원)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여학생의 경우 985명 중 292명인 29.6%가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크 폭

또한 작년과 비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.

-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최저임금액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

[그림_3]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(금액) 인지 여부

2.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여부

1). 청소년 80.6%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 있는 것 알고 있다

- 일하는 청소년(아르바이트 등)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'알고 있다'고 응답한 청소년은 1509명(80.6%), '모른다'가 251명(13.4%), '무응답'이 100명(5.3%)로 나타남.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514명 중 437명(85%)가 '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 있다'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'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'고 응답한 청소년 400명 중 267명(74%)가 알고 있다고 응답, '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'고 응답한 청소년 954명 중 773명(81%)가 알고 있다고 응답 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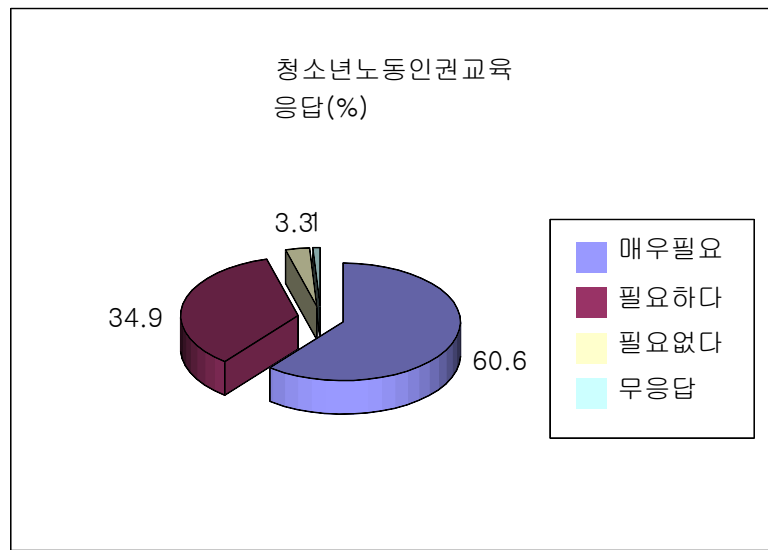
- 아르바이트 청소년 15 ~ 26%의 청소년은 자신들이 일할 때 보호해주는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음.

3. 청소년 노동인권교육

1). 청소년 95.6% ‘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’

– 근로계약서 작성, 주휴수당, 가산임금, 퇴직금, 휴가, 산재보험, 성희롱예방, 노동3권 등 ‘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‘매우 필요하다’가 1135명(60.6%), ‘필요하다’ 655명(34.9%), ‘필요없다’ 63명(3.3%)

–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, 성별에 상관없이 응답한 청소년 대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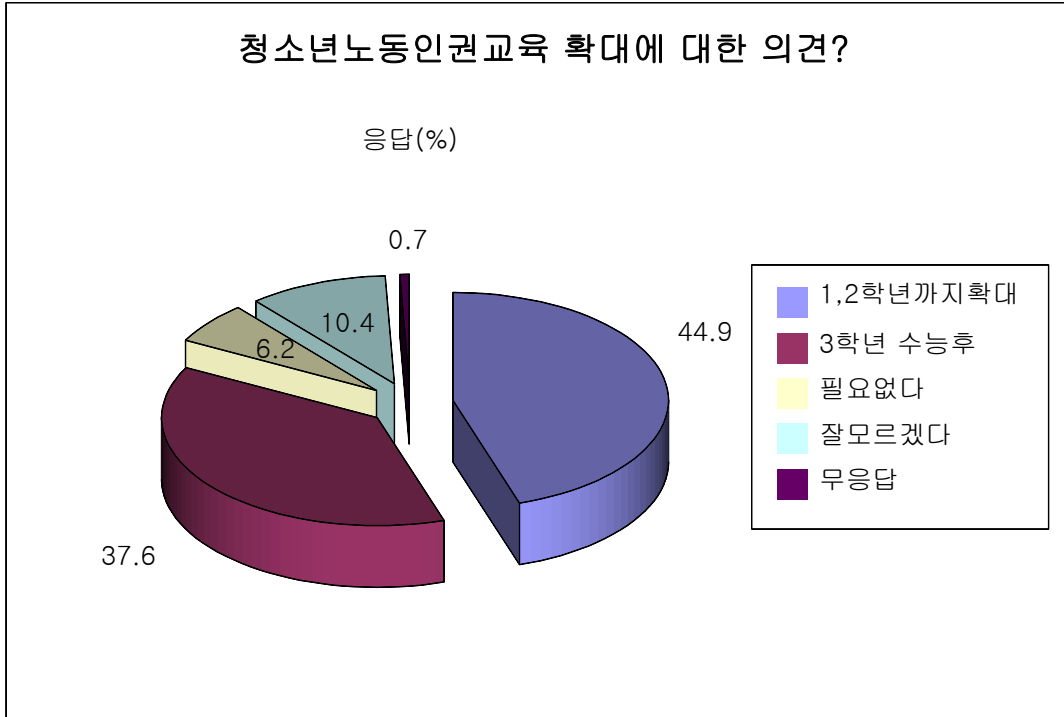
[그림_4]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

[표_1] 아르바이트 경험 유/무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필요성

구 분	응답자	노동인권교육 필요성		성별별 응답자		비 고
		필요	불필요	남성	여성	
①현재 알바 중	514명	필요	493명	남성 184명	여성 309명	
		불필요	16명			
②알바 경험자	400명	필요	385명	남성 213명	여성 173명	
		불필요	7명			
③알바 중+경험	914명	필요	878명	남성 397명	여성 482명	
		불필요	23명			
④알바 미경험자	954명	필요	908명	남성 475명	여성 433명	
		불필요	29명			

2)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여부

- 1,2학년까지 확대 842명 44.9%, 3학년 수능 후가 적당 705명 37.6%, 필요없다 116명 6.2%, 잘모르겠다 196명 10.4% 무응답 13명 0.7%



[그림_5]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여부에 대한 의견

- “1,2학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”는 응답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9.9%로,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40.5%에 비해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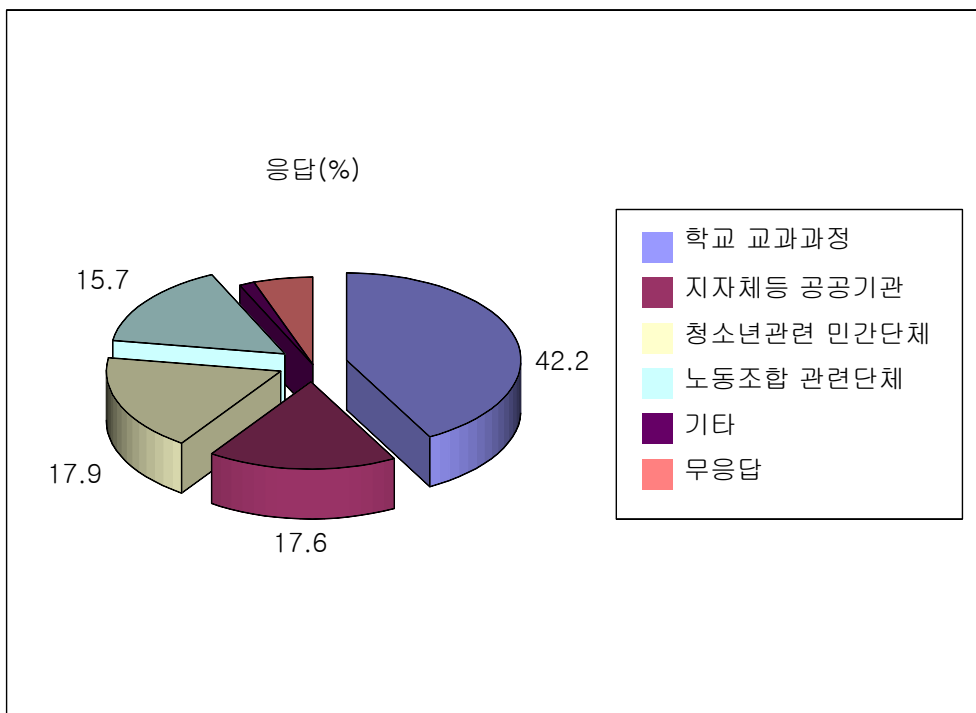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무경험자에 비해 ‘노동인권교육과 교육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’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.

- 반면, ‘3학년 수능 후가 적당하다’는 응답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42.4%로 높게 나타났으며, 아르바이트 경험자 그룹과는 약10%정도의 큰 차이 보임.

[표_2] 아르바이트 경험 유/무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확대에 대한 의견

구 분	아르바이트 경험자	아르바이트 미 경험자	비 고
1,2학년까지 확대 필요	456(49.9%)	387(40.5%)	
3학년 수능 후가 적당	298(32.6%)	405(42.4%)	
필요 없다	67(7.3%)	49(5.1%)	
잘 모르겠다	84(9.1%)	110(11.5%)	
무 응 답	9(0.9%)	3(0.3%)	
계	914명	954명	

3) 청소년이 생각하는 노동인권교육기관은 42.2%가 ‘학교 교과과정’이 적당



[그림_6]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노동인권교육기관

- 아산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‘학교 교과과정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자가 4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다음으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(17.9%), 지자체등 공공기관(17.6%), 노동조합관련 단체(15.7%) 순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‘학교교과과정(43.9%) > 청소년관련 민간단체(20.3%) > 노동조합관련 단체(15.7%) >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(14.7%)’ 순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적당하다고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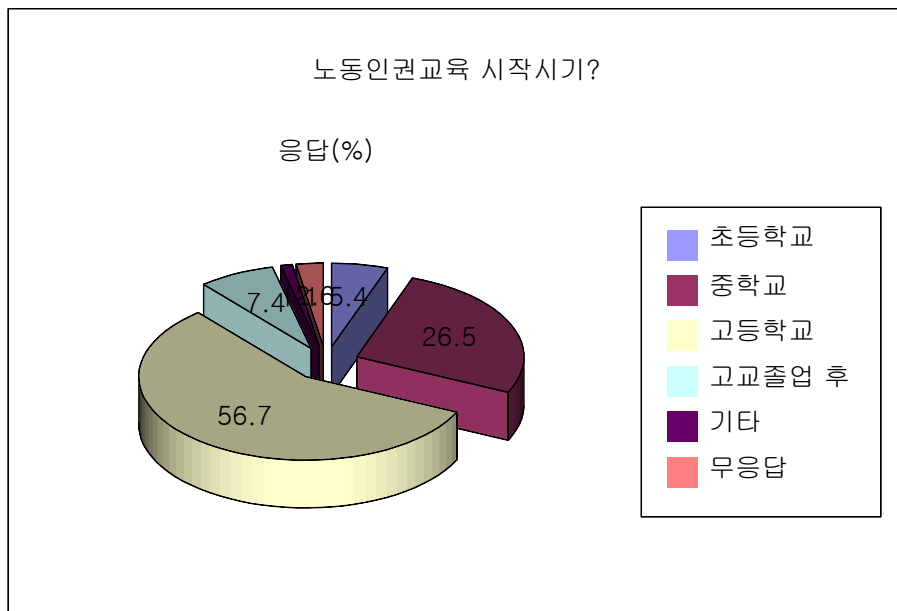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‘학교교과과정(40.7%) >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(20.5%) > 청소년관련 민간단체(15.6%)와 노동조합관련 단체(15.6%)’ 순으로 나타남.

-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교육기관별 응답자가 다르게 나타남.

[표_3] 청소년노동인권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_아르바이트 경험 여/부에 따른 차이

구 분	학교 교과과정	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	청소년관련 민간단체	노동조합관련 단체
알바 경험	43.9%	14.7%	20.3%	15.7%
알바 미경험	40.7%	20.5%	15.6%	15.6%

4)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법 교육 언제부터?



[그림_7]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노동인권교육 시기

- 노동인권교육(노동법)은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063명(56.7%)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중학교가 497명(26.5%) 고등학교 졸업이후가 139명(7.4%) 초등학교 102명(5.4%) 순으로 응답.

-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, 성별에 따라 근소한 차이는 있었으나,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.

[표_4] 청소년노동인권교육/노동법 교육시기_성별별, 아르바이트 경험 유/무

구 분	성 별		아르바이트 경험	
	남학생	여학생	유	무
초등학교	65(7.3%)	37(3.7%)	55(6.0%)	47(4.9%)
중 학 교	204(22.9%)	239(24.2%)	250(27.3%)	247(25.8%)
고등학교	480(54.1%)	583(59.1%)	533(60.5%)	529(55.4%)
고교졸업 후	96(7.4%)	43(4.3%)	45(4.9%)	93(9.7%)
기 타	15(1.6%)	6(0.6%)	7(0.7%)	14(1.4%)

4. 매월 1회 학교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

1)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 사업

-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6년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고, 2017년부터 아산지역 10개 고교 중 기숙형 고교 2곳, 거부 1곳을 제외한 7개 고교를 대상으로 함.

- 학교별 전담 상담강사를 배치하여 월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‘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’을 진행함.

- 2017년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결과 총12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, 주로는 ‘근로계약서 미작성’, ‘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’, ‘최저임금 위반’이 주를 이루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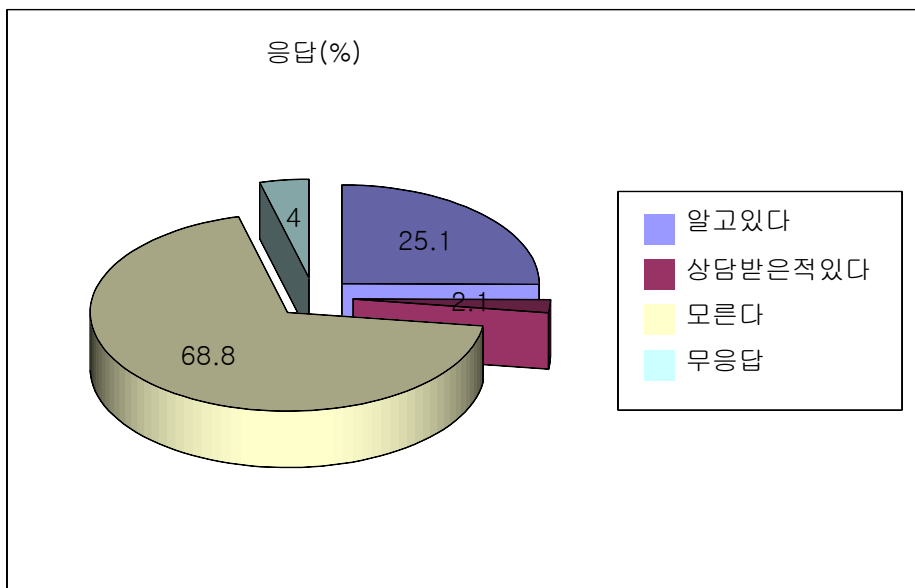
[표_5] 2017년 학교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결과

내 용	상담 수	내 용	상담 수
근로계약서 미 작성	28	최저임금 위반	9
주휴수당 미지급	28	연장, 야간, 휴일수당 미지급	12
퇴직금	3	해고예고위반	3
산업재해	4	임금(지각 임의공제)	2
성희롱	1	임금체불	4
폭력(폭언) / 인권(무시)	3	강제퇴근(임금미지급)	1
휴게시간 미부여	5	총임금액 과대신고(세액) → 기초생활수급 감액문제발생	1
청소년 심야근로강제	1	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할 것	19
근로계약 위반	1	계	125

- 상담사업의 홍보를 위해 학교입구에 현수막게시, 포스터부착, 언론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,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식당 앞 홍보등을 하면서 1년간 아르바이트 상담을 진행함.

- 1년간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은 ‘학교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’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려 함.

2) 찾아가는 알바상담에 대한 인지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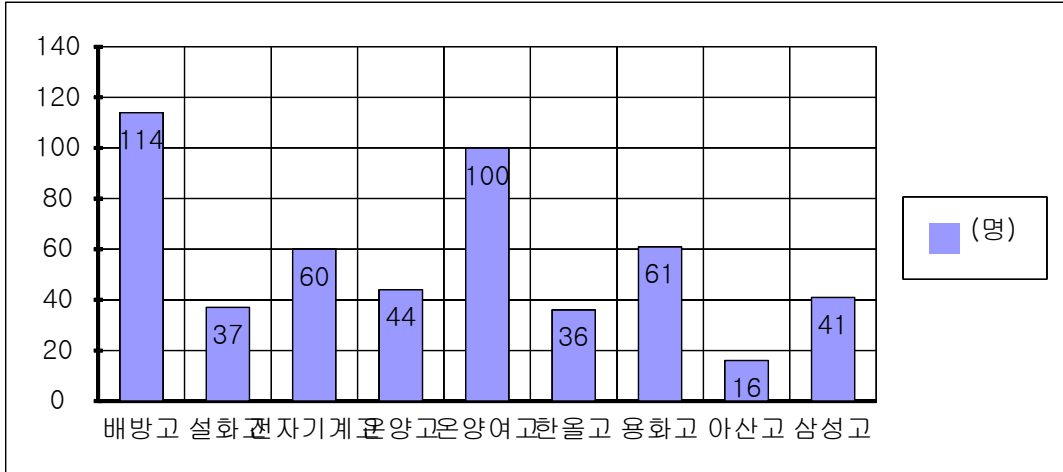


[그림_8] 찾아가는 알바상담 인지여부

- ‘알고 있다’는 응답이 25.1%, ‘상담 받은 적 있다’ 2.1%로 나왔으며, ‘모른다’는 응답은 68.8%로 매우 높게 나타남.

- 전체 응답자 1872명 중 ‘알고 있다’ 또는 ‘상담 받은 적 있다’고 응답한 청소년은 509명(27.1%)으로 나타남.

- 알고 있거나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학교별로 보면



[그림_9] 학교별 찾아가는 알바상담 인지여부

- 실태조사에 응답한 여학생 985명 중 ‘알고 있다’ 또는 ‘상담 받은 적 있다’고 응답한 청소년은 30.9%(286명)로 나타났으며, 남학생 887명중 25.1%(223명)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‘알고 있거나 상담 받은 적 있다’고 응답한 청소년 509명중에서는 ‘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[표_6] 찾아가는 알바상담 인지여부_아르바이트 경험 유/무에 따른 차이

구분	전체 응답자	찾아가는 알바상담 “알고있거나 상담받음”	비고
현재 아르바이트 중	514	172(33.4%)	
아르바이트 경험 있음	400	121(30.2%)	
아르바이트 경험 없음	954	216(22.6%)	
무응답	4	0	
계	1872	509	

5.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

1). 아르바이트 경험

- 아르바이트 경험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응답자 1872명 중 914명으로 48.82%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.

- 응답자 중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514명(27.46%)이고,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0명(21.37%).

- 남학생 전체 887명 중 495명(55.8%)이, 여학생 전체 985명 중 419명(42.5%)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,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- 지난해(2016년)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아산지역 3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응답자(1051명) 중 35.39%(372명)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[표_7]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_성별에 따른 차이

구 분	응답자 수	아르바이트 有 경험자	有 경험자 중 남학생	有 경험자 중 여학생
2016년	1051명	372명(35.39%)	207명(33.2%)	162명(37.7%)
2017년	1872명	914명(48.82%)	495명(55.8%)	419명(42.5%)

[표_8] 전국_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

(단위 : %, 시간, 원)

	2016아르바이트 경험률	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비율	일일 근로시간	시간당 금액
청 소 년	11.3	3.3	6.7	6,575
남 성	10.7	3.1	6.8	6,767
여 성	12.0	3.6	6.5	6,392
중학생	3.6	0.6	5.5	6,615
고등학생	18.1	5.8	6.9	6,569

자료 : 여성가족부, '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' 2016

- 지난해에는 ‘수능 전에 실태조사 진행’한 점과 ‘2,3학년을 중심으로 진행’한 반면 2017년에는 ‘수능 후 대부분 3학년을 중심’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음.

- 위 조사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[표_9] 아산지역 고등학교 아르바이트 현황

(단위 : 명, %)

학 교	응답자	아르바이트 중 이거나 경험자			비 고
		현재(%)	경험(%)	계(%)	
배방고등학교	252	84(33.3)	63(25.0)	147(58.33)	* 3학년
설화고등학교	236	80(33.9)	41(17.3)	121(51.27)	* 3학년
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	104	32(30.7)	41(39.4)	73(70.19)	* 2학년
온양고등학교	157	30(19.1)	37(23.5)	67(42.68)	* 3학년
온양여자고등학교	230	75(32.6)	44(19.1)	119(51.74)	* 3학년
온양한울고등학교	248	88(35.4)	48(19.3)	136(54.84)	* 3학년
온양용화고등학교	163	53(32.5)	48(29.4)	101(61.96)	* 3학년
아산고등학교	239	44(18.4)	66(27.6)	110(46.03)	* 3학년
삼성고등학교	243	28(11.5)	12(4.9)	40(16.46)	* 3학년
전 체	1872명	514명	400명	914명(48.82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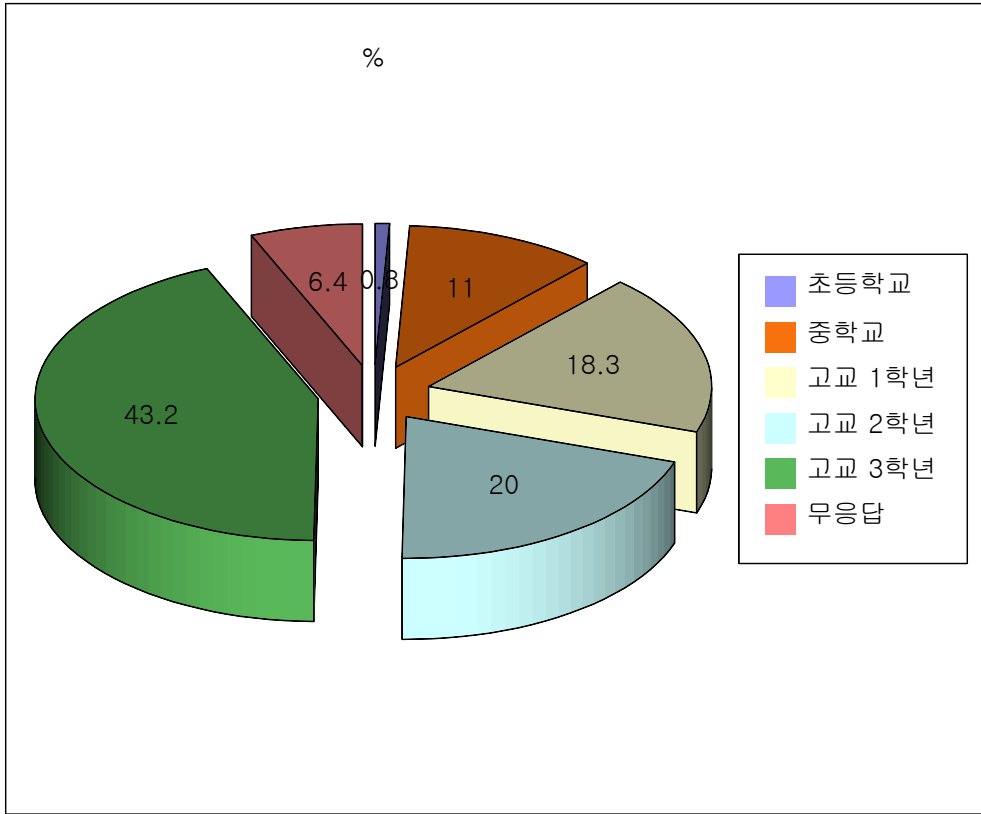
* 1. 여성가족부, ‘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’ 2016에 의하면 고등학생 18.1%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2.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응답자가 3명으로 분석에서 제외.

2). 첫 아르바이트 시기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914명 중 처음 아르바이트 시기로는 ‘고등학교 3학년(395명) > 고등학교 2학년(183명) > 고등학교 1학년(168명) > 중학교(101명) > 무응답(59명) > 초등학교(8명)’ 순으로 나타났으며, 여학생의 경우도 같은 순으로 나타남.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학생(419명)의 경우에는 ‘고등학교 3학년 > 고등학교 1학년 > 고등학교 2학년 > 중학교 > 초등학교’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남.



[그림_10] 첫 아르바이트 시기(단위 : %)

[표_10] 첫 아르바이트 시기_성별에 따른 차이

구 분	응답자수	여학생	남학생
계	914명(100%)	495명(100%)	419명(100%)
초등학교	8(0.8%)	3(0.6%)	5(1.2%)
중학교	101(11.0%)	54(10.9%)	47(11.2%)
고등학교 1학년	168(18.3%)	70(14.1%)	98(23.3%)
고등학교 2학년	183(20.0%)	102(20.6%)	81(19.3%)
고등학교 3학년	395(43.2%)	242(48.8%)	153(36.5%)
무 응 답	59(6.4%)	24(4.8%)	35(8.3%)

3).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

[표_11]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(단위 : 명, %)

친구나 지인소개	학교나 선생님추천	생활정보지	업소 구인광고
506(49.5%)	8(0.7%)	9(0.8%)	37(3.6%)
직업소개소	노동부 워크넷	알바사이트나 웹	기타
6(0.5%)	2(0.1%)	431(42.2%)	22(2.1%)

* 중복 응답수 포함(총 응답수 1021)

- 구직 경로로는 ‘친구나 지인소개 > 알바사이트나 웹’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다른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- 2016년에 ‘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’로 ‘친구나 지인소개 248명(66.6%) > 알바사이트나 웹 69(18.5%) > 무응답 20명(5.3%) > 기타 18명(4.8%) > 업소 구인광고 11명(2.9%) > 학교나 선생님추천 2명, 생활정보지 2명, 직업소개소 2명(0.5%) 순으로 나타남.

- 2017년 여성가족부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에서도 ‘친구나 선후배소개 >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’ 순으로 나타나 있으며, 아산지역에 비해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_12] 전국_아르바이트 정보 획득경로 (단위 : 명, %)

구 분	친구,선후배 소개	알바전문 포털	특정분야 알바소개업체(사이트)	부모님지인, 형제자매 소개	매장 구인광고	생활 정보지	학교 공공기관 모집공고	기타
전체	55.4	24.6	1.6	13.5	2.3	0.6	0.8	1.2
남 자	61.9	20.3	0.9	14.2	1.2	0.2	0.7	0.7
여 자	49.1	28.8	2.4	12.8	3.3	1.0	1.0	1.6
중학교	49.3	21.0	0.0	22.8	3.7	0.4	0.0	2.8
고등학교	56.5	25.2	1.9	11.8	2.0	0.6	1.0	0.9

자 료 : 여성가족부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 2017. 12

4).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957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> 사회경험 > 생활비 > 등록금등 학업관련 > 동기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'용돈'이라는 응답이 줄어든 반면 '사회경험, 생활비, 등록금등 학업관련' 이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16년에 비해 '용돈'이라는 응답은 크게 감소한 반면, '생활비, 등록금등 학업관련, 사회경험'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비슷한 유형으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, 용돈(62.9%) > 생활관련/등록금등(18.1%) > 사회경험(12.2%)로 나뉘볼 수 있으며,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18%는 직접적인 실생활과 직결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[표_13] 아산지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

(단위 : 명, %)

구 분	생활비	등록금등 학업관련	용돈	사회경험	진로결정 도움	동기없음	기타	계	
20 17	경험+ 알바 중	77 (8.0%)	65 (6.7%)	635 (66.3%)	107 (11.2%)	6 (0.6%)	46 (4.8%)	21 (2.2%)	957 (100)
	알바 중	55 (9.5%)	50 (8.6%)	364 (62.9%)	71 (12.2%)	4 (0.7%)	19 (3.3%)	15 (2.6%)	578 (100)
20 16	경험+ 알바 중	11 (4.1%)	17 (6.3%)	205 (77.0%)	23 (8.6%)	-	-	10 (3.7%)	266 (100)

※ 이 자료는 중복응답이 포함된 수로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했다고 응답한 수와 다름.

5). 아르바이트 시기

-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로는 ‘학기 중 주말’이 44.9%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응답했고, 그 다음으로 ‘학기 중 방과 후’에 한다는 응답이 34.6%로 나타남.
- ‘방학 중’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은 12.0%로 낮게 나타났으며,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‘학기 중 방과 후와 주말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.
- 아르바이트 시기는 2016년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.
-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, 여학생은 ‘학기 중 방과 후’가 높게 나타났으며, 남학생은 ‘학기중 주말’이 높게 나타남.

[표_14]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 (단위 : 명, %)

구 분		계	학기 중 방과후	학기 중 주말	방학 중	기타	무응답
2017	알바경험	914 (100)	317 (34.6%)	411 (44.9)	110 (12.0%)	23 (2.5%)	53 (5.8%)
	현재알바중	514 (100)	227 (44.1%)	223 (43.3%)	29 (5.6%)	21 (4.1)	14 (2.7%)
2016	알바경험	336 (100)	115 (34.2%)	151 (44.9%)	65 (19.3%)	5 (1.5%)	-
	현재알바중	131 (100)	64 (48.8%)	65 (49.6%)	1 (0.7%)	1 (0.7%)	-

[표_15]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기 (단위 : 명, %)

구 분	계	학기 중 방과후	학기 중 주말	방학 중	기타	무응답
남학생	195 (100)	79 (40.5%)	94 (48.2%)	10 (5.1%)	9 (4.6%)	3 (1.5%)
여학생	319 (100)	148 (46.4%)	139 (43.5%)	19 (5.9%)	12 (3.7%)	1 (0.3%)

6). 아르바이트 장소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14명의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로는 34.5%로 가장 많이 응답한 “식당”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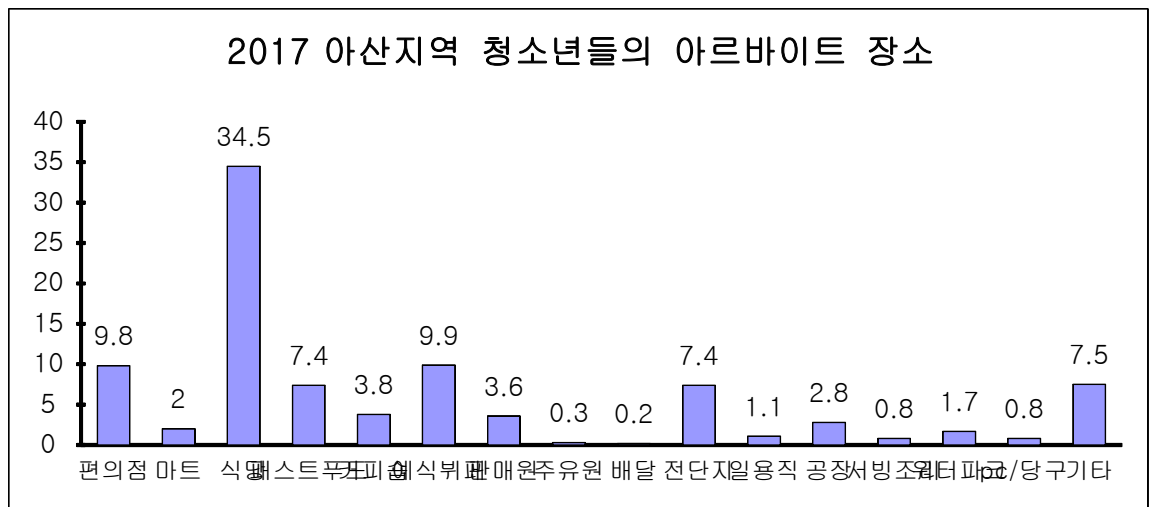
-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로는 식당 > 예식장이나 뷔페 > 편의점 > 패스트푸드점과 전단지 아르바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커피숍 > 판매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‘기타’라고 응답한 경우는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장소나 하는 일을 기록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.

[표_16] 2017년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 (단위 : 명, %)

편의점	마트	식당	패스트푸드점	커피숍	예식장/뷔페
133 (9.8%)	28 (2.0%)	468 (34.5%)	100 (7.4%)	52 (3.8%)	135 (9.9%)
판매원	주유원	배달	전단지	일용직	공장
49 (3.6%)	5 (0.3%)	4 (0.2%)	100 (7.4%)	15 (1.1%)	38 (2.8%)
술집 (서빙/조리)	위터파크	PC방/당구장	기타	무응답	계
11 (0.8%)	24 (1.7%)	12 (0.8%)	102 (7.5%)	78 (5.7%)	1354 (100)

*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중복응답 포함



[그림_11] 아르바이트 장소 (단위 : %)

[표_17] 2016년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

(단위 : 명, %)

편의점	식당	배달	주유원	판매원	일용직 (건설등)	공장
26 (7.4%)	212 (60.5%)	6 (1.7%)	1 (0.2%)	21 (6.0%)	16 (4.5%)	4 (1.1%)
마트	안전요원	위터파크	웨딩홀	전단지	카페	패스트푸드
4 (1.1%)	5 (1.4%)	10 (2.8%)	8 (2.2%)	5 (1.4%)	4 (1.1%)	7 (2.0%)
주차요원	키즈카페	기념품행사	미용실	PC방	*기타 - 과수원, 당구장 스टे프, 모텔하우스, 서비스업, 전국체전, 치킨팔이, 휴게소, 프리랜서	
3 (0.8%)	3 (0.8%)	2 (0.5%)	2 (0.5%)	2 (0.5%)		

- 2017년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로는 식당(34.5%) > 예식장/뷔페(9.9%) > 편의점(9.8%) > 패스트푸드점과 전단지(7.4%) > 커피숍(3.8%) > 판매원(3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2016년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식당(60.5%) > 편의점(7.4%) > 판매원(6.0%) > 일용직 건설등(4.5%) > 위터파크(2.8%) > 웨딩홀(2.2%) > 패스트푸드점(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2016년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‘식당’에 집중되어 있었으나, 2017년 실태 조사에서는 ‘식당’이라고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, “예식장/뷔페, 편의점, 패스트푸드점과 전단지”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이는 “[표_18] 2016 전국청소년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”과 비슷하게 나타남.

[표_18] 2016년 전국청소년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

(단위 : %)

	편의점	pc방 노래방등	마트 쇼핑몰등	기타 매장관리	식당 레스토랑	뷔페 웨딩홀	패스트 푸드점	베이커리 아이스크림
계	4.9	0.9	3.5	2.8	43.3	20.0	6.8	1.5
일 반 고	3.7	1.1	3.4	3.1	42.1	20.9	6.1	1.5
특성화고	7.1	0.5	3.6	2.1	45.4	18.4	8.0	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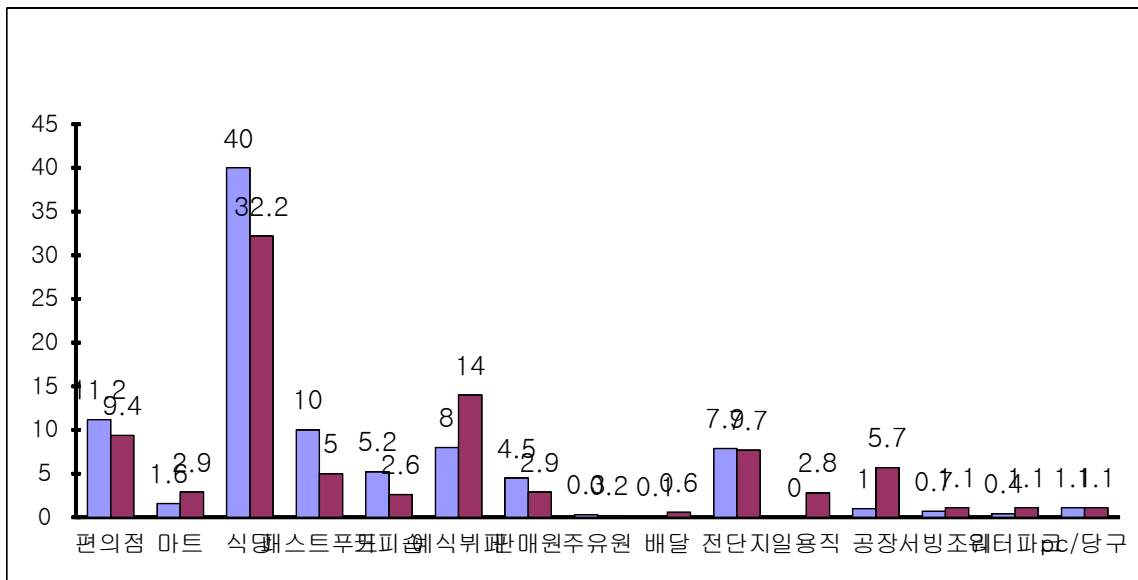
자 료 : 여성가족부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 2017. 12

○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장소

[표_19] 2017 아산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(성별별)

(단위 : 명, %)

성별	편의점	마트	식당	패스트푸드점	커피숍	예식장/뷔페
여성	82 (11.2%)	12 (1.6%)	293 (40.0%)	73 (10.0%)	38 (5.2%)	59 (8.0%)
남성	51 (9.4%)	16 (2.9%)	175 (32.2%)	27 (5.0%)	14 (2.6%)	76 (14.0%)
성별	판매원	주유원	배달	전단지	일용직	공장
여성	33 (4.5%)	2 (0.3%)	1 (0.1%)	58 (7.9%)	-	7 (1.0%)
남성	16 (2.9%)	1 (0.2%)	3 (0.6%)	42 (7.7%)	15 (2.8%)	31 (5.7%)
성별	술집 (서빙/조리)	워터파크	PC방/당구장	기타	계	
여성	5 (0.7%)	3 (0.4%)	8 (1.1%)	59 (8.0%)	733 (100)	
남성	6 (1.1%)	21 (1.1%)	6 (1.1%)	43 (7.9%)	543 (100)	



[그림_12] 성별별 아르바이트 장소(단위 : %)

- 아산지역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곳의 상위 5개 업종은 여성과 남성 청소년이 일하

는 업종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업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순서와 수치도 다르게 나타남.

- 아르바이트 장소를 성별에 따라 분류해보면 여성이 식당(40%) > 편의점(11.2%) > 패스트푸드점(10%) > 예식장/뷔페(8%) > 전단지(7.9%) 순으로 나타남.

- 남성의 경우에는 식당(32.2%) > 예식장/뷔페(14%) > 편의점(9.4%) > 전단지(7.7%) > 공장(5.7%) 순으로 나타남.

○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장소

[표_20]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(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) 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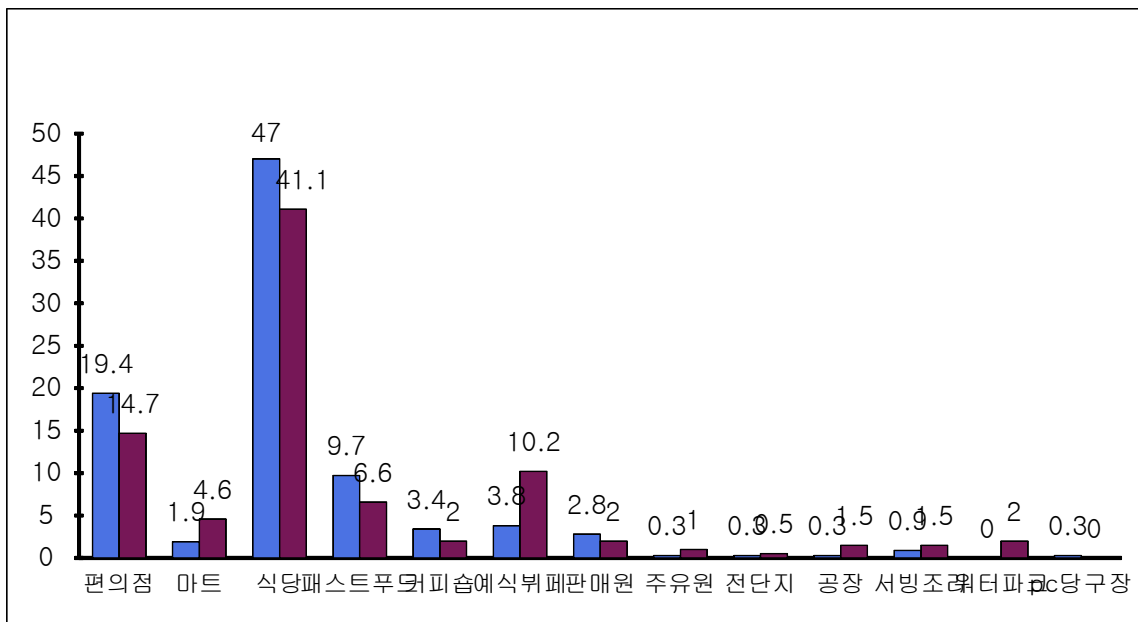
성별	편의점	마트	식당	패스트푸드점	커피숍	예식장/뷔페
여성	62 (19.4%)	6 (1.9%)	150 (47.0%)	31 (9.7%)	11 (3.4%)	12 (3.8%)
남성	29 (14.7%)	9 (4.6%)	81 (41.1%)	13 (6.6%)	4 (2.0%)	20 (10.2%)
성별	판매원	주유원	배달	전단지	일용직	공장
여성	9 (2.8%)	1 (0.3%)	-	1 (0.3%)	-	1 (0.3%)
남성	4 (2.0%)	2 (1.0%)	-	1 (0.5%)	-	3 (1.5%)
성별	술집 (서빙/조리)	워터파크	PC방/당구장	기타	무응답	계
여성	3 (0.9%)	-	1 (0.3%)	27 (8.5%)	4 (1.3%)	319 (100)
남성	3 (1.5%)	4 (2.0%)	-	12 (6.1%)	12 (6.1%)	197 (100)

- 2017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(여성 319명, 남성 197명)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으로는 식당, 편의점, 예식장, 패스트푸드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여성의 경우는 식당(47%) > 편의점(19.4%) > 패스트푸드점(9.7%) > 예식장/뷔페(3.8%) > 판매원(2.8%) 등으로 나타났으며, 대부분은 '식당, 편의점, 패스트푸드점'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남성의 경우에는 식당(41.1%) > 편의점(14.7%) > 예식장/뷔페(10.2%) > 패스트푸드점(6.6%) > 마트(4.6%) 등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했으나, 여성과 다르게 일부 집중된 곳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일부 몇 개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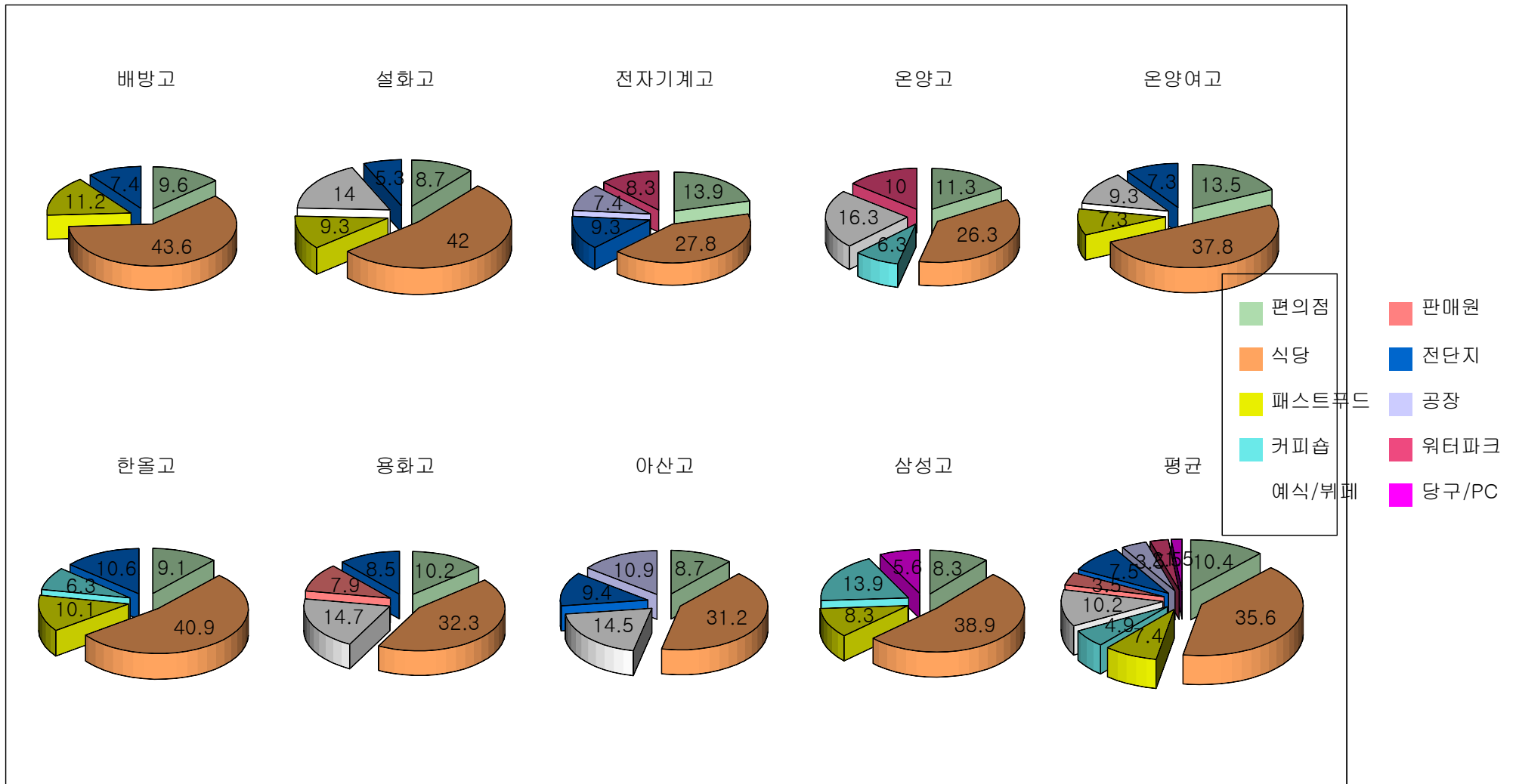


[그림_13]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장소(단위 : %)

[표_21]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(학교별)

(단위 : 명, %)

구 분	편의점	마 트	식 당	패스트 푸드점	커피숍	예식장 뷔페	판매원	주유원	배 달	전단지	일용직	공 장	술집 (서빙)	워터 파크	당구장 pc방	기 타	계
배방고	18 (9.6%)	5 (2.7%)	82 (43.6%)	21 (11.2%)	6 (3.2%)	20 (10.6%)	1 (0.5%)	-	-	14 (7.4%)	-	1 (0.5%)	-	1 (0.5%)	5 (2.7%)	14 (7.4%)	188 (100)
설화고	13 (8.7%)	4 (2.7%)	63 (42.0%)	14 (9.3%)	6 (4.0%)	21 (14.0%)	6 (4.0%)	-	-	8 (5.3%)	1 (0.7%)	-	-	-	1 (0.7%)	13 (8.7%)	150 (100)
전자 기계고	15 (13.9%)	-	30 (27.8%)	7 (6.5%)	2 (1.9%)	6 (5.6%)	3 (2.8%)	-	1 (0.9%)	10 (9.3%)	4 (3.7%)	8 (7.4%)	2 (1.9%)	9 (8.3%)	1 (0.9%)	10 (9.3%)	108 (100)
온양고	9 (11.3%)	4 (5.0%)	21 (26.3%)	2 (2.5%)	5 (6.3%)	13 (16.3%)	4 (5.0%)	2 (2.5%)	-	1 (1.3%)	3 (3.8%)	4 (5.0%)	1 (1.3%)	8 (10.0%)	1 (1.3%)	2 (2.5%)	80 (100)
온여고	26 (13.5%)	6 (3.1%)	73 (37.8%)	14 (7.3%)	9 (4.7%)	18 (9.3%)	9 (4.7%)	1 (0.5%)	1 (0.5%)	14 (7.3%)	-	1 (0.5%)	1 (0.5%)	3 (1.6%)	2 (1.0%)	15 (7.8%)	193 (100)
한울고	19 (9.1%)	3 (1.4%)	85 (40.9%)	21 (10.1%)	13 (6.3%)	9 (4.3%)	9 (4.3%)	1 (0.5%)	-	22 (10.6%)	-	3 (1.4%)	3 (1.4%)	-	2 (1.0%)	18 (8.7%)	208 (100)
용화고	18 (10.2%)	4 (2.3%)	57 (32.2%)	11 (6.2%)	4 (2.3%)	26 (14.7%)	14 (7.9%)	-	1 (0.6%)	15 (8.5%)	3 (1.7%)	5 (2.8%)	4 (2.3%)	3 (1.7%)	-	12 (6.8%)	177 (100)
아산고	12 (8.7%)	2 (1.4%)	43 (31.2%)	7 (5.1%)	2 (1.4%)	20 (14.5%)	3 (2.2%)	1 (0.7%)	1 (0.7%)	13 (9.4%)	4 (2.9%)	15 (10.9%)	-	-	1 (0.7%)	14 (10.0%)	138 (100)
삼성고	3 (8.3%)	-	14 (38.9%)	3 (8.3%)	5 (13.9%)	1 (2.8%)	-	-	-	3 (0.0%)	-	1 (2.8%)	-	-	2 (5.6%)	4 (11.1%)	36 (100)
평 균	10.4%	2.1%	35.6%	7.4%	4.9%	10.2%	3.5%	0.5%	0.3%	7.5%	1.4%	3.5%	0.8%	2.5%	1.5%	8.0%	100



[그림_14] 학교별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장소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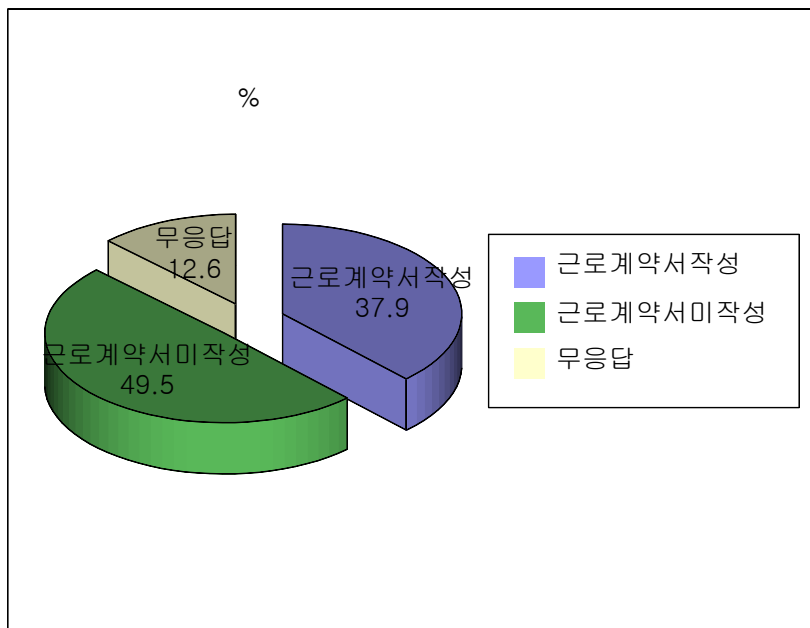
7). 근로계약서

○ 아산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49.6% 근로계약서 미 작성

- 근로기준법 제17조¹⁾, 제67조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음.

- 그러나, 2017년 아산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,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914명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346명으로 37.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은 452명으로 49.5%로 절반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여기에 무응답자 115명(12.6%)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50%를 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

[그림_15] 근로계약서 작성여부(단위 : %)

1) 근로기준법 제17조[근로조건에 명시]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임금
2. 소정근로시간
3. 제55조에 따른 휴일
4.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
5.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

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여성(42.9%)이 남성(33.5%)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[표_22] 성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(단위 : 명, %)

성 별	응답자	아르바이트 경험	근로계약서 작성
여 성	985명	419명	180명 (42.9%)
남 성	887명	495명	166명 (33.5%)

- 아산지역 청소년의 49.5%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'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'에 따르면 56.4%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[표_23] 근로계약서 작성여부(전국) (단위 : %)

구 분	작성하지 않음	작성, 필요내용 있는 지 모름	작성, 필요내용 일부만 포함	작성, 필요내용 모두 포함됨
고등학교	56.4%	13.5	3.8	26.3
일반계고	56.7%	12.9	4.4	26.0
특성화고	56.0%	14.6	2.6	26.7

자료 : '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' 중, 여성가족부 2017. 12.

○ 청소년 75.8%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지 못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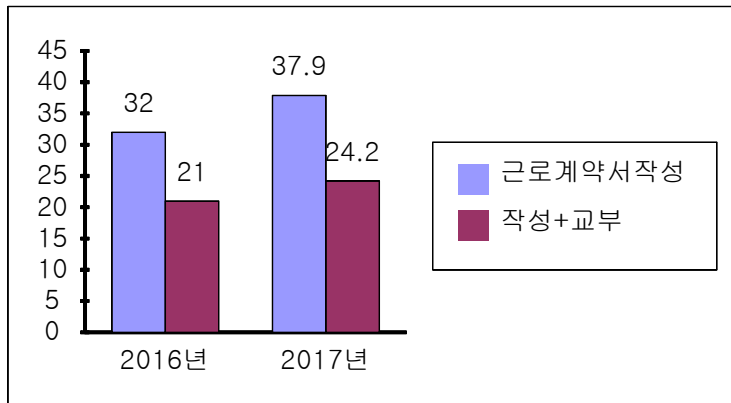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914명 중 221명(24.1%)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응답자(345명)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한 청소년이 36.1%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표_24]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 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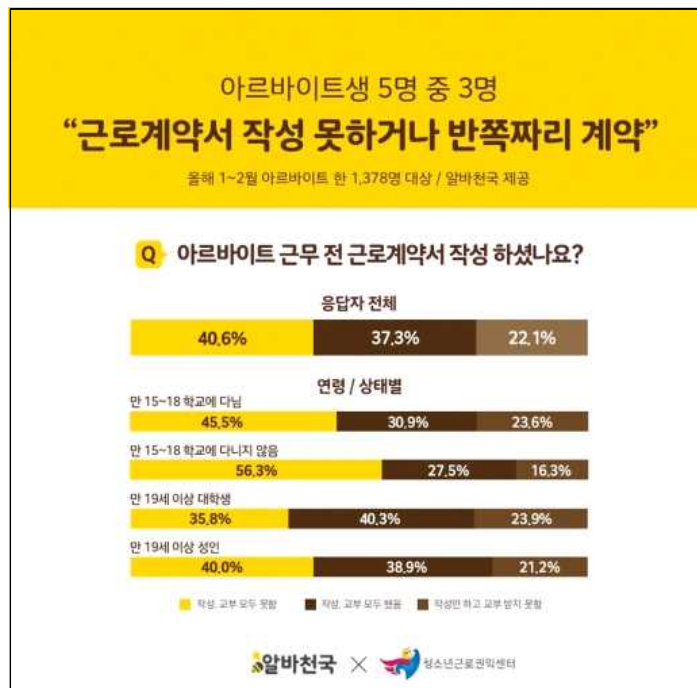
전 체	구 분	응 답	근로계약서 작성	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
1872명	아르바이트 경험자 (경험+현재)	914명 (100%)	346명 (37.8%)	221명 (24.1%)
	현재 아르바이트 중	514명 (100%)	213명 (41.43%)	135명 (26.2%)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514명 중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3(41.43%)명,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66명(51.75%), 무응답이 35명(6.8%)으로 나타났으며,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5명(26.2%)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-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은 청소년이 2016년에 비해 소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,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나,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더라도 교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.



[그림_16]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 (단위 : %)



[그림_17] 최저임금 인상 100일,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(자료:알바천국)

8). 근로조건

○ 근속기간은 평균 3.65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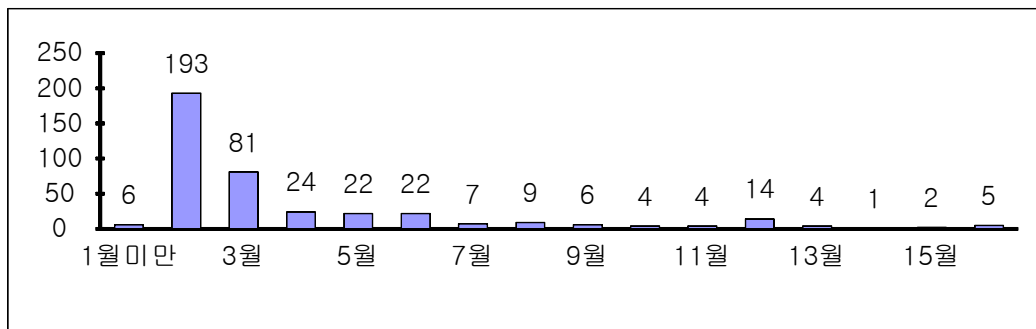
[표_25]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속기간 (단위 : 명)

근무기간	1월미만	1~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응답수	6	193	81	24	22	22	7	9	6	4
근무기간	11월	12월	13월	14월	15월	16월	18월	19월	24월	30월
응답수	4	14	4	1	2	1	1	1	1	1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14명 중에서 근무기간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은 404명이 응답하였으며, 이중 대부분은 1~2개월(47.7%)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3개월이 20.0%, 4~6개월은 5%대로 나타남.

- 69.0%가 3개월 미만으로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대부분 청소년들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하고 있음.

- 3개월미만으로 근무한다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‘학기 중 방과후(118명)’ 또는 ‘학기 중 주말(127명)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_18]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(단위 : 명)

- 근무기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근무일수 평균 3.24일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14명 중에서 근무일수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은 536명 임.

[표_26]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주당 근무일 수 (단위 : 명,%)

근무일 수	1일	2일	3일	4일	5일	6일	7일
응답자 수 (%)	28명 (5.2%)	246명 (45.9%)	65명 (12.1%)	37명 (6.9%)	96명 (17.9%)	53명 (9.8%)	11명 (2.0%)

- 주당 근무일수는 2일(45.9%) > 5일(17.9%) > 3일(12.1%) 순으로 나타남.

○ 1일 평균 근무시간 6.5시간, 근무시간 관련 31.5%가 범위반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14명 중 1일 근무시간에 응답한 청소년은 510명.

[표_27]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일 근무시간 (단위 : 명,%)

근무시간	1시간	2시간	3시간	4시간	5시간	6시간
응답자 수	4 (0.8%)	5 (1.0%)	14 (2.7%)	112 (22.0%)	99 (19.4%)	71 (13.9%)
근무시간	7시간	8시간	9시간	10시간	11시간	12시간
응답자 수	44 (8.6%)	48 (9.4%)	26 (5.1%)	33 (6.5%)	15 (2.9%)	39 (7.6%)

- 1일 근무시간은 4시간(22.0%) > 5시간(19.4%) > 6시간(13.9%) > 8시간(9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근로기준법 제69조²⁾ 법률로 정한 ‘청소년 노동시간 7시간’ 위반이 31.5%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.

○ 아르바이트 청소년 휴게시간 47.2%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14명 중 1일 근무시간에 응답한 청소년은 510명으로 이 중에서 4시간이상 13시간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375명 임.

- 근로기준법 54조³⁾는 사업주는 4시간이상의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

2) 근로기준법 제69조 [근로시간]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□ 법 제110조 제1호 - 법 제69조를 위반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) 근로기준법 제54조 [휴게시간]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게 부여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,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⁴⁾**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[표_27] 아르바이트 경험(경험+현재 알바 중)자 휴게시간 부여여부 (단위 : 명,%)

전체	없다	있다	무응답
375 (100%)	177 (47.2%)	181 (48.2%)	18 (4.8%)

[표_28]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휴게시간 부여여부 (단위 : 명,%)

전체	없다	있다	무응답
249 (100%)	127 (51.0%)	114 (45.7%)	8 (3.2%)

- [그림_18]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됨.



[그림_19] 자료 : 파이낸셜뉴스 중 2018.03.19

최영희기자

□ 법 제110조 제1호 -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)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[휴게시설]** ①사업주는 근로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○ 임금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중 임금항목에 금액을 시급으로 정확히 기록한 응답자 208명의 평균시급은 6,966원으로 나타남.
-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알바천국이 ‘2017년 상반기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’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7,180원으로 아산지역평균보다 214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전국평균은 6,990원으로 아산지역 평균보다 24원 높음.
- 응답자 208명 중 최저임금위반은 13건(6.25%)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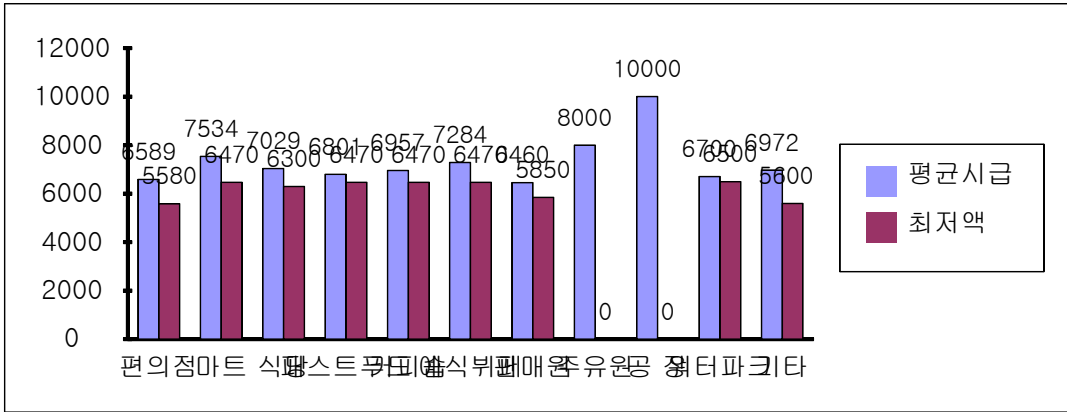
[표_29]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임금(시급) (단위 : 명)

시 급	6470원이하	6470원	6500,6600원	7000원이하	7000원	7500원이하
응답 수	13	42	37	7	65	3
시 급	7500원	8000원이하	8000원	8500원이하	10000원	계
응답 수	12	3	17	3	6	208명

- 최저임금 이하지급 업종으로는 식당(6) > 편의점(4), 기타(2) > 판매원(1) 순
- 최저임금 업종으로는 편의점(17) > 식당(10) > 패스트푸드(6) > 예식장·뷔페/판매원(3)순으로 나타남.

[표_30]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업종의 평균시급 (단위 : 명/원)

아르바이트 장소	인원	평균시급	비고
편의점	37명	6,589원	
마 트	8명	7,534원	
식 당	96명	7,029원	
패스트푸드점	18명	6,801원	
커피숍	6명	6,957원	
예식장·뷔페	19명	7,284원	
판매원(옷, 핸드폰 등)	6명	6,460원	*1곳만 최저임금이하
주유원	1명	8,000원	
공 장	1명	10,000원	
워터파크	3명	6,700원	
기 타	13명	6,972원	
전 체	208명	6,966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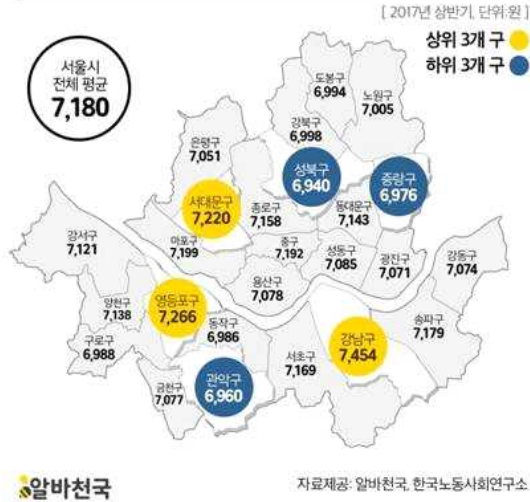


[그림_20] 아르바이트 업종별 평균시급과 최저시급 (단위 : 원)

[표_31] 지역별 평균시급 비교_2017년 상반기 기준 (단위 : 원)

구 분	아 산	충 남	전 국	서 울
평균시급	6,966원	6,960원 (6원↓)	6,990원 (24원↑)	7,180원 (214원↑)

2017년 상반기 서울시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분포



[그림_21] 2017년 상반기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 (자료: 알바천국)

○ 주휴수당 지급여부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14명 중 주휴수당⁵⁾과 가산임금⁶⁾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.0%과 38.6%로 나타남.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514명 중 주휴수당은 55.8%가, 가산임금은 47.1%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_32]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주휴수당/가산임금지급여부 (단위 : 명/%)

응답자	구분	지 급	미지급	무응답
914명	주휴수당	93명 (10.1%)	412명 (45.0%)	409명 (44.7%)
	가산임금	48명 (5.2%)	353명 (38.6%)	513명 (56.1%)

-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전체보다 ‘주휴수당, 가산임금’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_33] 현재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주휴수당/가산임금지급여부 (단위 : 명/%)

응답자	구분	지 급	미지급	무응답
514명	주휴수당	60명 (11.6%)	287명 (55.8%)	167명 (32.4%)
	가산임금	34명 (6.6%)	242명 (47.1%)	238명 (46.3%)

9). 부당대우 / 대처

-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14명의 아산지역 청소년들이 당한 ‘부당한 대우’는 “일하다 다친 적 있다 > 욕설을 들었다 > 임금을 제 날 못 받았다 > 일방적으로 해고 >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(보상)받지 못했다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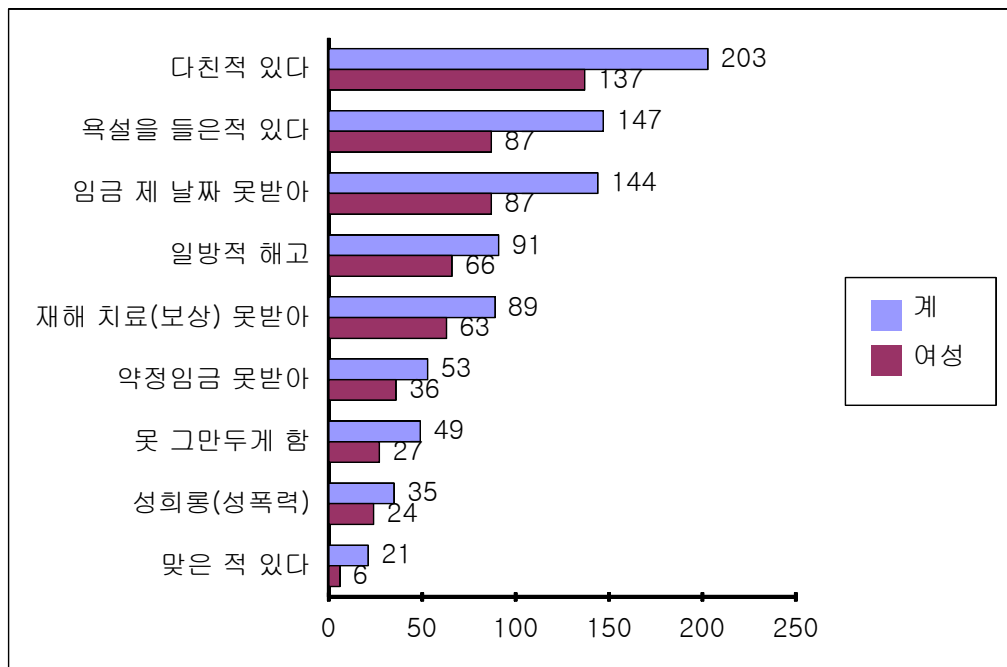
5) 근로기준법 제55조 [휴일]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.

6) 가산임금 : 시간외 근로수당, 휴일 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등

[표_34]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경험 1

(단위 : 명/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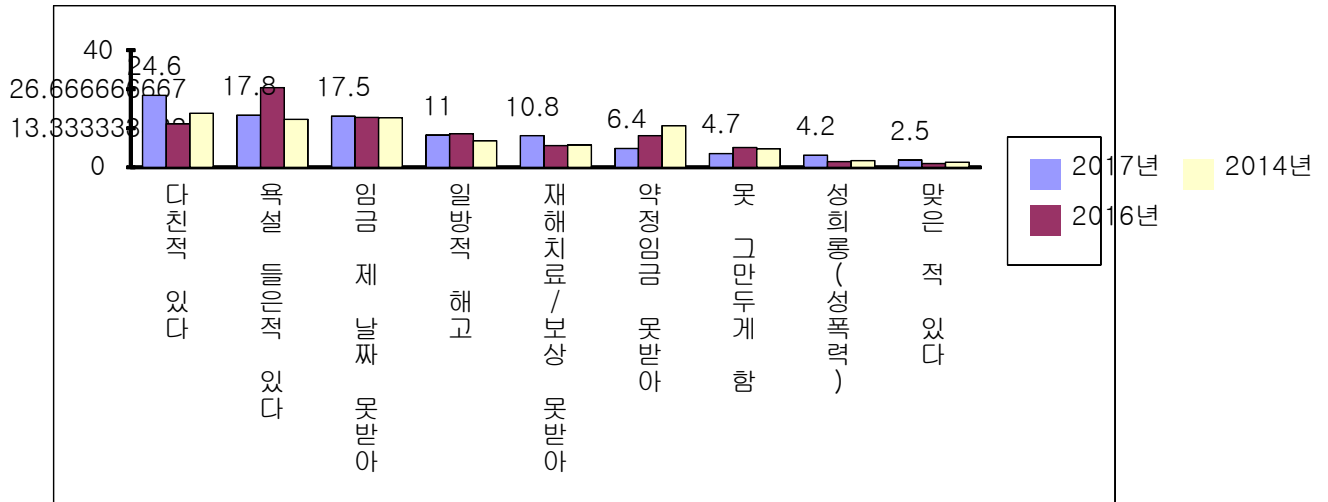
구 분	계	남	여	2016년	2014년
① 일하다 다친 적 있다	203(24.6%)	66	137	14.9%	18.5%
②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	147(17.8%)	60	87	27.2%	16.4%
③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 있다	144(17.5%)	57	87	17.0%	16.9%
④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	91(11.0%)	25	66	11.5%	9.1%
⑤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한 적 있다	89(10.8%)	26	63	7.4%	7.6%
⑥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	53(6.4%)	17	36	10.8%	14.2%
⑦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	49(4.7%)	12	27	6.8%	6.3%
⑧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성희롱(성폭력)당한 적 있다	35(4.2%)	11	24	2.0%	2.3%
⑨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	21(2.5%)	15	6	1.3%	1.7%



[그림_22]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중 각 내용별 '여성' 응답자 수

- '부당한 대우를 받았다'고 응답한 중에서 '맞은 적 있다'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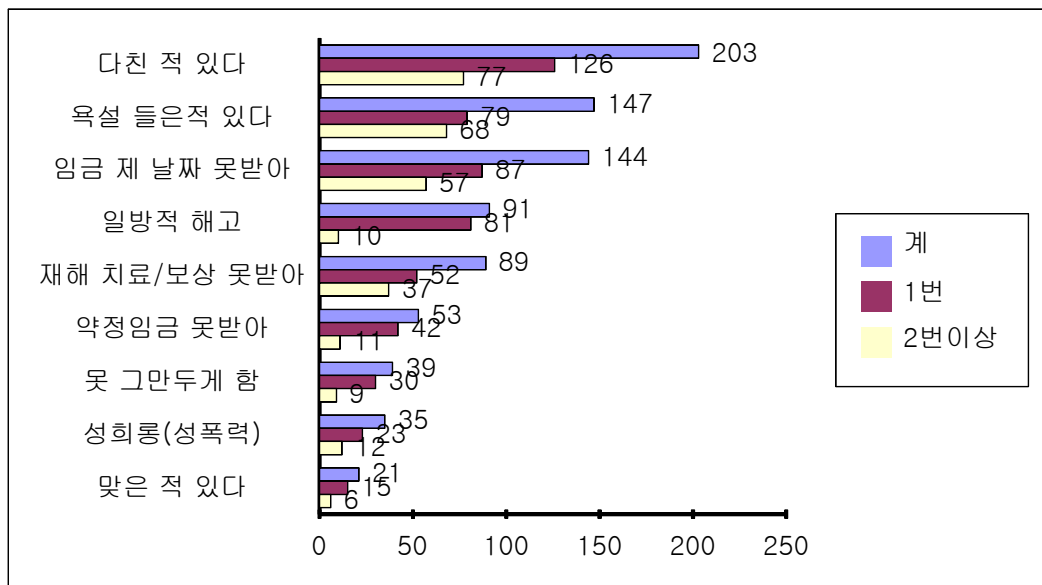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실태조사에서도 '부당한 대우를 받았다'고 응답한 전체 147건 중 남학생이 53건(36.0%), 여학생이 94건(63.9%)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_23]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시기별/내용(최근 3년) 비교

[표_34]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경험 2 (단위 : 명)

구분	계	1번	2번이상
① 일하다 다친 적 있다	203	126	77
②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	147	79	68
③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 있다	144	87	57
④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	91	81	10
⑤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한 적 있다	89	52	37
⑥ 반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	53	42	11
⑦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	39	30	9
⑧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성희롱(성폭력) 당한 적 있다	35	23	12
⑨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	21	15	6



[그림_24]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횟수별 비교

- '부당한 대우를 받았다'고 응답한 822건 289건(35.1%)이 '2번이상' 부당대우를 받았다
고 응답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_35] 아산 청소년아르바이트 집중업종 부당대우 업종별분류 (단위 : %/명)

편의점	마트	식당	패스트푸드	예식장/뷔페	전단지
21.3% (175명)	3.4% (28명)	50.7% (417명)	6.6% (54명)	7.4% (61명)	2.1% (17명)

- 대부분 부당 집중업종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
나고 있으며, '식당 > 편의점 > 음식점/뷔페, 패스트푸드' 순.

[표_36] 부당대우 유형별 집중업종 분류 (단위 : %/명)

구 분		응답자 수
임 금	① 식당(47.2%)> 편의점(24.5%)> 음식점/뷔페(7.5%)> 마트(5.7%) 순	53명
	② 식당(53.5%)> 편의점(23.6%)> 음식점/뷔페(6.9%)> 패스트푸드(5.7%) 순	144명
해고 / 퇴직	③ 식당(53.8%)> 편의점(20.9%)> 마트, 패스트푸드, 음식점/뷔페(4.4%) 순	91명
	④ 식당(51.3%)> 편의점(23.1%)> 패스트푸드(10.3%)> 음식점/뷔페(5.1%) 순	39명
폭언 / 폭행	⑤ 식당(46.3%)> 편의점(19%)> 음식점/뷔페(10.9%)> 패스트푸드(7.5%) 순	147명
	⑥ 식당(38.1%)> 편의점, 음식점/뷔페(23.8%)> 전단지, 일용직(4.8%) 순	21명
성희롱/성폭력	⑦ 식당(57.1%)> 편의점(20%)> 당구장, 기타(5.7%) 순	35명
산업 재해	⑧ 식당(53.2%)> 편의점(19.7%)> 패스트푸드(10.8%)> 음식점/뷔페(6.4%) 순	203명
	⑨ 식당(47.2%)> 편의점(22.5%)> 음식점/뷔페, 패스트푸드(7.9%) 순	89명

주 : ①일하다 다친 적 있다 / ②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
 ③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 있다 / ④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
 ⑤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한 적 있다 / ⑥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
 ⑦그만두고 싶는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 / ⑧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성희롱(성폭력) 당한 적 있다
 ⑨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

○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

[표_37] 부당대우 시 대처 방법

(단위 : 명/%)

참고 일했다	그만 두었다	주변도움으로 해결	직접 해결	무응답
181명 (19.8%)	207명 (22.6%)	67명 (7.3%)	80명 (8.7%)	379명 (41.4%)

- 부당대우 시 대처방법으로는 ‘그만 두었다(22.6%) > 참고 일 했다(19.8%) > 직접 해결했다(8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대부분 적극적 해결방법 보다는 소극적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_38]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시 대처방법(전국)

(단위 : %)

구 분	참고 일함	일 그만 둠	혼자 따짐	가족과 항의	지인과 항의	기타 등
고등학교	66.8%	19.6%	11.1%	2.1%	3.5%	4.4%
일반계고	66.9%	17.2%	11.7%	2.3%	3.7%	4.8%
특성화고	66.7%	23.0%	10.2%	1.9%	3.1%	3.4%

자료 :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 중, 여성가족부 2017. 12.

- 아산시와 마찬가지로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에서도 ‘참고 일했다,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’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.

[표_39] 부당대우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둔 이유

(단위 : 명/%)

도움 청할 곳 몰라서	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	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	당시 부당함을 몰라서	무응답
36명 (3.9%)	173명 (18.9%)	210명 (22.9%)	39명 (4.2%)	456명 (49.9%)

- 부당 대우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 둔 이유로는 ‘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’ 2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‘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’ > ‘당시에는 부당함/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’ 순으로 나타남.

- 201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’에서도 “부당행위 및 처우를 당했을 때, ‘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’를 조사한 결과, ‘귀찮고 번거로워서’라는 응답이 42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‘고용주가 평소 잘 해줘서(15.2%), 신고/항의가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(13.1%)순으로 나타남.

2017년 아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

1. 일하는 청소년(아르바이트 등)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?
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

2. 2017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?
 ①알고 있다.(1시간당 _____ 원) ②모른다

3. 근로계약서 작성, 주휴수당, 가산임금, 퇴직금, 휴가, 산재보험 등 ‘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?
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필요 없다

4. 아산시에서는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‘수능 후 청소년노동인권교육(인권, 근로계약, 임금, 산업재해, 현장실습, 성희롱예방, 해고, 노동3권 등)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 ①1,2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②3학년 수능 후 가 적당하다 ③필요 없다
 ④잘 모르겠다

5. 노동(근로)에 대한 개념(이해)과 권리, 인권, 노동관련법(근로기준법 등)을 교육하는 노동인권교육은 어느 기관(단체)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 ①학교 교과과정 ②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③청소년 관련 민간단체
 ④노동조합 관련 단체 ⑤기타()

6.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법(근로기준법 등)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.
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고등학교 졸업 이후 ⑤기타()

7. 아산시(노동상담소, 비정규직지원센터, 노사민정협의회)에서 ‘매월 1회 학교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신가요?
 ①알고 있다 ②상담 받은 적 있다 ③모른다

8.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, 한 적이 있나요?
 ①현재 하고 있다 ②한 적이 있다 ③없다

9. 가장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시기는 언제인가요?
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1학년 ④고등학교 2학년 ⑤고등학교 3학년

10.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나요?(중복체크 가능)

- ①친구나 지인소개 ②학교나 선생님 추천 ③생활정보지 ④업소 구인광고
 ⑤직업소개소 ⑥노동부 워크넷 ⑦알바사이트나 웹 ⑧기타()

11.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①생활비마련 ②등록금등 학업관련 비용마련 ③용돈 ④사회생활 경험
 ⑤진로결정에 도움 받고 싶어서 ⑥특별한 동기 없음(친구가 하자고 해서 등) ⑦기타()

12.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떤 기간에 하십니까?

- ①학기 중 방과 후 ②학기 중 주말 ③방학 중 ④기타()

13. 아르바이트를 하는(했던) 곳은 어디 입니까? (중복체크 가능)

- ①편의점 ②마트 ③식당 ④패스트푸드점 ⑤커피숍 ⑥예식장·뷔페
 ⑦판매원(옷, 핸드폰 등) ⑧주유원 ⑨배달 ⑩전단지 ⑪일용직(건설 등)
 ⑫공장 ⑬술집(서빙/조리) ⑭위터파크 ⑮PC방/당구장 ⑯기타()

※ “배달”에 답한 경우 (13-1)에 답해 주세요.

(13-1)현재 일하는 배달 오토바이(차량)의 경우 자동차(오토바이)보험 외에도 ‘산업재해보험’에 가입되어 있나요?

- ①둘 다 가입 ②자동차 보험만 가입 ③산업재해보험만 가입 ④잘 모름 ⑤기타()

14.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지급 받았나요?

- 14-1. 근로계약서 작성 : ①작성했다 ②작성하지 않았다
 14-2. 근로계약서 지급 : ①지급받았다 ②지급받지 못했다

15.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근무조건과 최근 1년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의 근무조건은 어땠나요? 빈칸 또는 □에 √표 하거나 적어주세요.

근무기간	1일 근무시간	1주 근무일수	휴게시간	임금	주휴수당	가산임금
□2016년 □2017년 ()개월	_____시간	_____일	□ 없다 □ 있다	□시급 □일급 □월급 _____원	□ 지급 □ 미지급	□ 지급 □ 미지급

※ [주휴수당] 1주 15시간이상 근무 + 1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그 주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 (40시간 근무자는 8시간, 40시간 미만자는 근무시간 비례지급 예) 20시간 ÷ 5 × 시급

※ [가산임금] 연장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

(사업주를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, 통상임금의 50%추가지급, 시급제 알바의 경우 시급의 50% 추가지급)

* 연장근무-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* 야간근무-22:00~06:00사이 근무 * 휴일근로-주휴일, 노동절(5월 1일)등 휴일에 한 근무

16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모두 √해 주세요.

구 분	문 항(내용)	없다	1번	2번이상
임 금	①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이 있다.			
	②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.			
해고 / 퇴직	③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.			
	④ 그만두고 싶는데 못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.			
폭언 / 폭행	⑤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.			
	⑥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.			
성희롱/성폭력	⑦ 사업주, 상사, 동료, 손님한테 성희롱(성폭력)을 당한 적이 있다.			
산업재해	⑧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.			
	⑨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.			
기 타	⑩ 기 타(직접 작성해주세요)			

17.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?

- ①부당하다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 ②그만 두었다 ③주변 도움을 받아 해결
④직접 방법을 찾아 해결

18.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하거나, 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①도움 요청 할 곳 몰라서 ②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
④당시는 부당하다 것 몰랐다